

지방자치론[객관식 문제해설] 법령·정답 수정(1차) 내역

출판사 신조사 / 2011.12.01

[제 2 장]

p. 37 (29번) 《해 설》 기관별 특수적·기능적 분권은 특수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거나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법인격을 가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고, 그로 하여금 일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도 [제159조~제164조](#)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p. 66 (111번) 《해 설》 현행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을 자치단체장이 갖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에 있어서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12조 제6항](#)).

p. 68 (117번) 《해 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고 하여 ~

p. 72 (123번) 《해 설》 ② 제헌헌법 제18조는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과 민간 노동자의 구분 없이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를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하도록 규정한 반면, [헌법\(제33조 제1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충성조사는 안보와 관계 깊은 직위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 3 장]

p. 83 (23번) 《해 설》 지방자치법 [159조](#)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

p. 84 (24번) 《해 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는 1973년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88년에 상세한 내용이 규정된 후 부분적인 개정이 있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2에서 제158조](#)까지 행정협의회 구성, 조직, 규약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통해 이의 시행에 관련된 보다 자세한 규

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p. 88 (33번) 《해 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행위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완성된다. 즉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합원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

p. 99 (59번) 《해 설》 ④ 1999년 8월 31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분합하거나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조 제2항)고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p. 103 (69번) 《해 설》 지방자치법(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4.1개정) <정답> ①

p. 109 (83번) 《해 설》 조례 또는 규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폐 또는 통치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조례와 규칙이 당연히 소멸되는 경우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는 당장 준거할 조례와 규칙이 없어 사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실시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서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지방자치법 제25조).

[제 4 장]

p. 120 (8번) 《해 설》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자치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수익 또는 능력에 따라 응분의 부담을 지는바, 여기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수익자부담금 등이 있으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 이외의 자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도 무방하다. 비용분담의무를 불이행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행해지며(동법 제139조 제3항).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40조).

p. 156 (100번) 《해 설》 우리나라는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즉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

p. 162 (112번) 《해 설》 ①② 1999년 8월 31일 공포된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하면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제정·개폐청구제도(동법 제15조)와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동법 제16조)를 도입하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③ 경기도의 안양시·부천시, 서울시의 강동구·양천구, 충청북도, 경상남도, 청주시 등의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옴부즈만을 내부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1996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997년 3월 옴부즈만을 선정하고 현재 실시중에 있다. 대법원도 충청북도 ‘청소리옴부즈만조례안’과 관련하여 합의 제행정기관인 옴부즈만을 집행기관의 장인 도지사소속으로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헌법이나 다른 법령상으로 별도의 설치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7.4.11, 96추138 결정). ④ 지방자치법 제14조(주민투표)에 규정되어 있다.

p. 164 (116번) ④ 주민감사청구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제16조 내지 제15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의 비치·열람 등의 절차를 거쳐 청구요건을 갖추면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p. 166 (121번) 《해 설》 지방자치법은 제16조에서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

[제 5 장]

p. 198 (25번) 《해 설》 ③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위법한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72조 제3항). 또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다(동법 제172조 제4항). ④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동법 제24조), 만약 위반할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⑤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일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하며(동법 제27조 제2항),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에 자치단체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때 비로소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된다.

p. 198 (26번) 《해 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배해서는 아니 된다(지방자치법 제24조).

p. 199 (28번) 《해 설》 지방자치법이 개정(1994년 3월 6일)되기 이전에는 벌칙으로 징역 3월 이하까지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p. 200 (32번) 《해 설》 ③ 조례안은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 6 장]

p. 232 (32번) 《해 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p. 243 (60번) 《해 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기타 법령에 의한 필요적 의결사항에는 ~

p. 249 (81번) 《해 설》 ① 선결처분권은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9조). ③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129조). ②⑤ 외에도 지방채 발행권(동법 제124조), 계속비 지출권(동법 제128조) 등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행사할 수 있다. ④ 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동법 제92조).

p. 253 (90번) 《해 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 ~

p. 253 (91번) 《해 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p. 253 (92번) 《해 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을 열거하고,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p. 255 (96번) 《해 설》 지방자치법 제44조를 보면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9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

p. 265 (120번) 《해 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14조).

p. 266 (123번) 《해 설》 ②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인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는 지방자치법(제110조)에 규정되어 있다.

p. 272 (135번) 《해 설》 재의에는 (i)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법 제26조), (ii) 의회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재의요구(동법 제107조), (iii) 지방의회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요구할 수 있는 재의요구 및 법령상의 의무적 경비 또는 비상재해 응급복구경비 등을 삭감하는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동법 제108조), (iv) 지방의회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시·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당해 자치단체장에게 재의요구를 하도록 한 경우의 재의요구(동법 제172조)가 있다. 이 중에서 (i), (ii), (iii)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른바 임의적 재의요구사항이며, (iv)는 법률상 재의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필요적 재의요구사항이다. ①은 현행지방자치법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제도이며, ②③은 임의적 재의요구사항에 속한다. ⑤ 일부수정된 조례는 의결할 수 없다.

p. 273 (136번) 《해 설》 ①②③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이며, 시·도별 교육위원회정수는 2010.2.26 일부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조와 5조에 따르면 7인 내지 15인으로 한다.

p. 273 (137번) 《지 문》 ① 교육위원은 임기 4년의 유급직이다. ④ 경력자로서 교육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⑤ 교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

p. 273 (137번) 《해 설》 ③ 교육위원 선출방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먼저 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에서는 시·군·자치구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시·도의회가 선출토록 하였다. 그 후 제4차 개정(1997. 12. 17)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시·도 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선출하였다가 제5차 개정(1998. 6. 3)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교육위원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였다가 **현재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의원과 시·도회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2010.2.26 신설, 2014.6.30까지 유효>**

p. 273 (138번) 《해 설》 ① 장은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 선결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전결처분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④ 선결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때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⑤ 선결처분에 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물론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09조 제4항**). 아울러 ~

p. 275 (141번) 《지 문》 ② 교육감은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으로서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 276 (142번) 《지 문》 ③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 ④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p. 276 (142번) 《해 설》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후보자등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

p. 276 (144번) 《해 설》 ③ 교육위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p. 276 (145번) 《해 설》 ③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답 ④>

p. 278 (148번) 《해 설》 ② 의안의 발의는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1/5 이상의 연서로 하지만 예산안 및 결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다.

[제 7 장]

p. 287 (17번) 《해 설》 1994년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분쟁심의회기관으로 도입되었다가 1999년 8월 31일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해 분쟁의결기관이 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의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지방분쟁조정 위원회)에 설치되는 분쟁의결기관이다(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

p. 289 (21번) 《해 설》 지방자치법 제148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i)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ii) 미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상호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iii) 그 기간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분쟁조정신청이 없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③ 동법 제14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p. 294 (35번) 《해 설》 지방자치법은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i)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조언·권고·지도 및 재정·기술지원(제166조), (ii)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 위임사무처리의 지도·감독(제167조), (iii) 국무총리 소속하의 협의조정기구를 통한 중앙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 협의조정(제168조), (iv)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제169조), (v) 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제170조의2), (vi) 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제171조), (vii) 재의요구명령과 제소지시 및 직접제소(제17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p. 304 (60번) 《해 설》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지방자치법 제171조).

p. 316 (94번) 《해 설》 ①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에서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동법 제149조 제2항에서 심의·의결사항을 법정화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 체 상호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덧붙여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공익상 필요 시 직권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동법 제150조 제1항](#)). ⑤ 개정 지방자치법(1999.8.31)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149조의2, 제150조의3](#)).

[제 8 장]

p. 327 (24번) 《해설》 ①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필요한 경우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시·도에 한해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부교육감이 되고,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단체장 또는 인사담당국장이 된다([동법 제9조 제2항](#)).

[제 9 장]

p. 362 (63번) 《해설》 ②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 ③ 동조 제4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동조 제5항](#)).

p. 376 (103번)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예산안은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상기 정오표(법령, 해설 수정)의 내역 외에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신조사 메일 (sinjosa@sinjosa.co.kr)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저자와 상의하여 조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출판 신조사 -